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기자재정책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14명(6급 1명, 7급 13명)과 직급상향한 3명(열관리운영7급 1명, 사무운영7급 1명)에 대한 정원을 해소하며, 공익직불제 도입·시행에 따른 효율적·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직불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개 지원에 신설하고, 지원 내 부서 간 사무분장을 재조정하며, 경영직불팀 신설에 따른 직급 배치의 적정성 유지 등을 위해 9개 지원 및 시험연구소에 대해 총 10명의 직급상향(행정·농업·통계6급 7명, 행정·농업·통계7급 3명)하는 한편,

농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방역정책국 및 유통소비정책관 내의 과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축산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말산업 육성법」, 「도축장 구조조정법」 및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영

제11조제4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낙농진흥법」의 운영
13.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4.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제3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의사법」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용
10. 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11.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운용 및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12. 위기대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13. 가축방역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대책 수립·운영

제11조의2제5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축 매몰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1항제10호, 제11호, 제13호,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를 제2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운영

20. 농산물의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21.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항

22.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사항

23. 제20호에 따른 인증제도, 제21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 및 제22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24.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2항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운영

19.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0. 농산물 직거래 및 소매유통에 관한 사항

21. 소비지·산지 협력에 관한 사항

2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23. 농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

제22조제2항 중 “유통관리과 및 품질관리과를”을 “유통관리과, 품질관리과 및 경영직불팀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통관리과장”을 “유통관리과장 및 경영직불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경영직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점검 및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항

4.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92”를 각각 “1,478”로 하고,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08”을 “114”로 하며,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55”를 “138”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74”를 “171”로 하며, “열관리운영주사보 1”을 삭제하고, “사무운영주사보 2”를 삭제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1”을 “2”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25”를 “27”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1명), 별표 11의 정원 14명(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3명)은 각각”을 “1명)은”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4항 중 “열관리운영주사보 1명, 사무운영주사보 2명, 농업서기”를 “농업서기”로, “열관리운영서기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2명, 농업서기보”를 “농업서기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의 경영직불팀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경영직불팀의 소관사무는 품질관리과에서 수행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1에 따른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7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3명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7명,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3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축산정책국) ① ~ ② (생략)	제11조(축산정책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축산물 브랜드 육성 · 지원	<삭 제>
5. 축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6. 도축 · 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축 · 가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8. 축산물 등급제도의 운영 및 지원	8. 축산물 등급제도의 운영 및 지원
9. 「축산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말산업 육성법」 및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운영	9. 「축산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말산업 육성법」, 「도축장 구조조정법」 및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운영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축산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	11. 「낙농진흥법」의 운영

용에 관한 법률」 및 「낙농
진흥법」의 운영

12. (생 략)

<신 설>

<신 설>

제11조의2(방역정책국) ①·②
(생 략)

③ 방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가축 매몰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삭 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9.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축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에 관한 사항

14. 축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방역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9. 「수의사법」 및 「공중방역
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용

10. 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11.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운
용 및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12. 위기대응 관련 교육프로그
램 개발

13. 가축방역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4. (현행 제9호와 같음)

④ 구제역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수의사법」 및 「공중방역
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용

3. 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의 운용
및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에 관
한 사항

5. ~ 7. (생 략)

8. 위기대응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9. (생 략)

<신 설>

⑤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대책
수립·운영

5. 가축방역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6. · 7. (생 략)

<신 설>

④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5. ~ 7. (현행과 같음)

<삭 제>

9. (현행과 같음)

10.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대책
수립·운영

⑤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6. · 7. (현행과 같음)

8. 가축 매몰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식품산업정책실) ① ~ ⑩
(생 략)

⑪ 유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10.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
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농산물 직거래 및 소매유통
에 관한 사항

12. (생 략)

13. 소비지·산지 협력에 관한
사항

14. (생 략)

1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16. 농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사
항

17.·1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식품산업정책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2. (현행과 같음)

<삭 제>

1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7.·18. (현행과 같음)

1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에 관한 법률」의 운영

20. 농산물의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21.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
한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
항

<신 설>

<신 설>

<신 설>

19. (생 략)

⑫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농산물의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

5.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
한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사
항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운영

7.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사항

8. 제4호에 따른 인증제도, 제5
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 및
제7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
의 홍보에 관한 사항

9. ~ 16. (생 략)

17.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에

22.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사항

23. 제20호에 따른 인증제도, 제
21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
및 제22호에 따른 지리적 표
시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

24.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

25. (현행 제19호와 같음)

⑫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운영

<삭 제>

<삭 제>

9. ~ 16. (현행과 같음)

<삭 제>

관한 사항

18. 삭 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⑬ ~ (생 략)

제22조(지원) ① (생 략)

② 농관원 지원에 유통관리과
및 품질관리과를 둔다.

③ 유통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품질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생 략)

⑤ 품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19.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0. 농산물 직거래 및 소매유통에 관한 사항

21. 소비지·산지 협력에 관한 사항

2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23. 농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

⑬ ~ (현행과 같음)

제22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유통관리과,
품질관리과 및 경영직불팀을 -
-----.

③ 유통관리과장 및 경영직불팀장-----

-----.

④ (현행과 같음)

⑤ -----

분장한다.

1. ~ 3. (생략)

4. 농업경영체 등록 및 맞춤형

농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공익직접지불제도·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이행점검 및 사

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및

농업인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

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 13. (생략)

⑥ ~ ⑧ 삭제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9. ~ 13. (현행과 같음)

⑨ 경영직불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에 관
한 사항

2. 농업인 확인제도 운영에 관
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점검
및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항

4.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농기자재정책팀은 <u>2020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 제3조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 정원 1명(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u>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u> 6. <u>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u>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 ----- <u>2022년 12월 31일</u>----- --. ② ~ 제3조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 ----- -----
---	---

1명), 별표 11의 정원 14명(행정 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3명)은 각각 2022년 6월 25일까지 존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3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③ (생략) ④ 별표 11에 따른 서기관·기 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농 업사무관 6명,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2명, 행정주사·농 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6명, 전 산주사 1명, 농업주사보 5명, 운 전주사보 1명, <u>열관리운영주사 보 1명, 사무운영주사보 2명, 농 업서기 4명, 운전서기 1명</u>은 20 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 정된 정원은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6명, 행정주사·농 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2명, 행	1명)은 ----- -----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3호 농림 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농업서기</u> ----- ----- ----- ----- ----- -----
---	---

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6명, 전산주사보 1명, 농업서기 5명, 운전서기보 1명, <u>열관리운영서기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2명, 농업서기보 4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u>	----- ----- ----- <u>농업서기보</u>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492	1,478	-14
일반직 계	1,492	1,478	-14
행정주사 · 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08	114	+6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55	138	-17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74	171	-3
열관리운영주사보	1	<삭 제>	-1

<u>사무운영주사보</u>	<u>2</u>	<u><삭 제></u>	-2
열관리운영서기보	<u>1</u>	<u>2</u>	+1
사무운영서기보	<u>25</u>	<u>27</u>	+2